

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(제5조 관련)

1. 중간처분시설

가. 소각시설

- 1) 일반 소각시설
- 2) 고온 소각시설
- 3) 열분해 소각시설
- 4) 고온 용융시설
- 5) 열처리 조합시설 [1)에서 4)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]

나. 기계적 처분시설

- 1) 압축시설(동력 7.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)
- 2) 파쇄·분쇄 시설(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)
- 3) 절단시설(동력 7.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)
- 4) 용융시설(동력 7.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)
- 5) 증발·농축 시설
- 6) 정제시설(분리·증류·추출·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)
- 7) 유수 분리시설
- 8) 탈수·건조 시설
- 9) 멸균분쇄 시설

다. 화학적 처분시설

- 1) 고형화·고화·안정화 시설
- 2) 반응시설(중화·산화·환원·중합·축합·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)
- 3) 응집·침전 시설

라. 생물학적 처분시설

- 1) 소멸화 시설(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)
- 2) 호기성(好氣性: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)·혐기성(嫌氣性: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) 분해시설

마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
2. 최종 처분시설

가. 매립시설

- 1) 차단형 매립시설
- 2) 관리형 매립시설(침출수 처리시설, 가스 소각·발전·연료화 시설 등 부대 시설을 포함한다)

나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
3. 재활용시설

가. 기계적 재활용시설

- 1) 압축·압출·성형·주조시설(동력 7.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)
- 2) 파쇄·분쇄·탈피 시설(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)
- 3) 절단시설(동력 7.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)
- 4) 용융·용해시설(동력 7.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)
- 5) 연료화시설
- 6) 증발·농축 시설
- 7) 정제시설(분리·증류·추출·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)
- 8) 유수 분리 시설
- 9) 탈수·건조 시설
- 10) 세척시설(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나. 화학적 재활용시설

- 1) 고형화·고화 시설
- 2) 반응시설(중화·산화·환원·중합·축합·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)
- 3) 응집·침전 시설
- 4) 열분해시설(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)

다. 생물학적 재활용시설

- 1)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
 - 가) 부숙(썩혀서 익히는 것) 시설(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,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)
 - 나) 사료화 시설(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)
 - 다) 퇴비화 시설(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,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)
 - 라)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
 - 마) 부숙토(腐熟土: 썩혀서 익힌 흙) 생산시설
- 2) 호기성·혐기성 분해시설
- 3) 버섯재배시설

라. 시멘트 소성로

마. 용해로(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바. 소성(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)·탄화 시설

사. 골재가공시설

아. 의약품 제조시설

자. 소각열회수시설(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 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)

차. 수은회수시설

카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